

『현대북한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06.02.
개정 2007.07.10.
개정 2020.03.13.
개정 2023.10.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북한연구』의 발행 제반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부정행위 의혹 조사절차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책임) ① 편집위원회는 『현대북한연구』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 책임진다.

- ② 편집위원회는 『현대북한연구』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의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게재가 결정된 모든 논문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게재가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⑦ 논문에서 거짓 보고, 부정행위 의혹, 중요한 실수 등 게재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사 후 처리를 결정한다. 부정행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5조 이하의 사항을 따른다.
-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⑨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성원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책임) ①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투고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 ②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3조의2(저자의 책임) ①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③ 저자는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중복출판)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게재를 거부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은 중복 게재·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 게재·출판 사실을 알리고 게재·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 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게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5조(부정행위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 삭제<2023.10.13.>

제7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북한대학원대학교 장은 편집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절차)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2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7조 진실성 검증 원칙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11조(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현대북한연구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편집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간 보관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간 보관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와 보고) ① 편집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북한대학원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북한대학원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①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북한대학원대학교는 「현대북한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이외 필요한 조치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른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2. 피조사자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 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제17조(제보자 보호) ①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허위제보자에 대해서는 본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문제해결 및 수정을 위한 결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